장애인・노인・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약칭: 장애인등편의법 시



[시행 2023. 12. 11.] [보건복지부령 제983호, 2023. 12. 11., 일부개정]

보건복지부 (장애인권익지원과) 044-202-3307, 3308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장애인・노인・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2. 30., 2015. 7. 29.>
- 제2조(편의시설의 세부기준) ① 「장애인・노인・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8조제 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·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15. 7. 29.>
 -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·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<개정 2008. 3. 3., 2010. 3. 19.>
- **제3조(안내표시기준)**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<개정 1999. 6. 8.>
- **제3조의2(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)**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때에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 부서에 적합성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관련 적합성 확인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·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은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 [본조신설 2015. 7. 29.]
- 제3조의3(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)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"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를 말한다.
 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6명 이상일 것. 이 경우 건축, 토목, 조경 및 장애인복지(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) 분야에 관한 전문인력 각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가.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
 - 나.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
 - 다.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
 - 라.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
 - 마.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
 - 바. 장애인복지(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)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
 - 2. 적합성 확인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을 갖출 것
 - 3. 적합성 확인과 관련한 연구 또는 사업추진 실적이 있을 것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을 정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관련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 - ③ 시설주관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을 의뢰 받은 대행기관은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·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 -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시설주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5. 7. 29.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4조(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)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6. 6. 30.>

- 1.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
- 2.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의 적합 여부
- 3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시설주관기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7. 29.>
- 1. 조사개요 및 조사방법
- 2.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현황
- 3. 건축물 유형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
- 4. 시설주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
- 5.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
- 6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-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의 선정, 조사기간의 설정, 조사표 개발 및 조사원 교육 등의 순서로 하며, 그밖의 실태조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<개정 2016. 6. 30.>

[제목개정 2016. 6. 30.]

제5조(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)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2, 7, 26.>

- 1. 대상시설의 구조 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
- 2.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
- 3. 그 밖에 대상시설의 주변 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또는 도서

제6조(비치용품의 종류등)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휠체어, 점자 안내책자, 보청기기,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해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. <개정 2005. 12. 30., 2023. 12. 11.>

- 제6조의2(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)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(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나 체류지를 말한다) 관할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・군수・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영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따른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한다.
 - 1. 보행에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(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)
 - 2.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(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
 - 3. 사업자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증(영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, 노인의료복지시설, 장애아 보육 시설 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)
 -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(신청인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)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,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(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)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)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영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
- 1.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
- 2.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
- 3.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재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된 경우

[본조신설 2015. 7. 29.]

제6조의3(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현황의 기록·관리)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현황을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5. 7. 29.]

제7조(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) ①영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「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12. 30., 2012. 9. 4., 2015. 7. 29.>

②시설주관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강제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, 이행강제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[제목개정 2012. 9. 4.]

제8조(규제의 재검토)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(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5. 1. 5.]

부칙 <제983호,2023. 12. 1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편의시설의 안내표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편의시설의 안내표지는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